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6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9월 3일

나. 제 출 자: 송순효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의결(2020. 9. 16.)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송순효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안 제1~2조] 목적 및 용어 정의

2)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

3) [안 제5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수립 사항 규정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안 제6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

5) [안 제7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사항 규정

6) [안 제8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관련 사항 규정

7) [안 제9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 보건소 진료비 감면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8) [안 제10조] 표창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의약과

다. 기　　타: 입법예고(2020. 9. 4. ~ 9. 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제정조례안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등[1] 및 인체조직[2]의 기증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의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규율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 수립(안 제5조)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접수 수행(안 제6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안 제7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지원(안 제9조) 등의 사항을 정함

-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조례는 정비하고 안 제9조의 예우·지원 규정에 따른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을 각각 규정함

○ 장기 및 인체조직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고 기증자는 부족한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등을 말함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함

참 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2.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3. "조직이식"이라 함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직은행"이라 함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제13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는 기관을 말한다.

5. "조직관리"라 함은 조직을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살아있는 자"·"뇌사자"·"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①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기관

3.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증자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2.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3.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4.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

3.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⑤ 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